

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102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4. 24. 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: 2026. 4. 24.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5. 7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안전관리과장 이형호)

가. 개정이유

-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전국 시·군·구 위원 명칭 구체화 및 단일화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명칭 변경(안 제3조제5항제7호)
- (기존)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고성지역 수사관
 - (변경)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제2호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0169(2026. 3. 5.)호]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530호

- 예고기간: 2026. 3. 10.~2026. 3. 30.(20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○ 검토결과 및 의견

-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가정보원 관계자 포함 기준에 부합하며 국가기관 명칭의 단일화 및 현실 반영을 위한 정비로,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5. 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